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법 인 **대 한 병 원 협 회**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현금영수증 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 재안내

1. 관련근거 : 국세청 전자세원과-191(2010.4.1.)

대병협기조 제2010-106(2010.3.23.)

대병협기조 제2010-127(2010.4.7.)

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등

2. 지난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세청의 "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"와 관련하여, 주요 제도내용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

1) 시행시기 : **2010.4.1.**

2) 주요내용

- 대통령령(소득세법시행령)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**30만원** 이상의 거래금액(부가가치세액 포함)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

- 다만,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 (소득세법 제162조의3) [법인사업자 관련 규정 : 법인세법 제117조의2]

※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**50%**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(조세범처벌법 제15조)

-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(장)를 신고하였을 경우, 미발급금액의 **20%**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(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)

-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

없는 경우 등에는 '국세청 지정번호'(010-000-1234)로 현금영수증을 자
진 발급하여야 함

- ※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현금을 받은
뒤 5일 이내에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
지급되지 않음

나. 의료기관 적용상의 유의사항

○ 발급대상 금액

- 의료기관의 경우, 보험급여금액 및 본인부담금액을 합산한 진료비
총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
-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이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
에 포함될 수 있음

- ※ 단,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금액은 본인부담금액에 한하며, 보
험급여금액은 과태료 및 포상금 대상금액 산정에서 제외됨(조세범처벌법
제15조)

다. 기타 유의사항

○ 환자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

-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진료받지 아니하는 특수한 경우, 예컨대 특정
교정시설(교도소 등)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한 후 교정시설의
장을 대상으로 전체 진료비 청구를 하는 경우,
혹은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 (환자)집단을 진료한
후, 당해 기관의 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현금영수증
발행여부 및 시기 등
- (발행여부) 현금 혹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제공받은 경
우,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 발생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
함

- ※ 단,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
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

- (발행시기) 현금을 수령받은 후 지체 없이 발급(계좌이체 등의 경우도
동일하게 취급)

- (발행대상) 사업자 명의 혹은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. 단, 현금영수증
발급대상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 및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필히 국세
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함

- <붙임> 1.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국세청 기존 보도자료
2.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주요내용 요약
3.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
4.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. 끝.

※ <붙임> 자료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- 협회업무 - 기획정책실 메뉴
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대한병원협회장



수신처

전국 병원장

사원 김성은 차장 정교숙 부장 방성민 사무총장 서석완

시행 : 기획정책 제 2012-307 (2012.12.10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16 전송 02-705-921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kse@kha.or.kr